

의안번호	2213025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5. 11. 10.
추계번호	25G5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영상·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384.7억원, 2028년 397.8억원 등 2027년부터 2037년까지 11년간 총 1,095.3억원(연평균 9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1년간 -368억원(연평균 -33.5억원)
 - 영상·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년간 506억원(연평균 -253억원)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221.3억원(연평균 -110.7억원)
 -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출자에 대한 문화콘텐츠로의 감면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동 비용추계는 추계가 불가능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7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8~2037	누적	연평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18조의3)	-18.4	-36.8	-312.8	-368	-33.5
영상·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2년 연장 (안 제25조의6)	-253	-253		-506	-253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2년 연장 (안 제25조의7)	추 정 곤 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29조의8 제5항)	-113.3	-108.0		-221.3	-110.7
소 계	-384.7	-397.8	-312.8	-1,095.3	-99.6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7. 12. 31.	
2	안 제25조의6 (영상·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분야 확대, 명칭 변경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7. 12. 31.	
3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7. 12. 31.	
4	안 제29조의8제5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7. 12. 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안 제25조의6 (영상·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3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29조의8제5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취업일로부터 10년간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2026~2028년 국내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2027~2038년 발생
 - 그 외 통합고용세액 및 영상·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제도의 세액공제 적용기한(2025.12.31.)을 고려 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2026~2027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2027~2028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2028년에 발생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5년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되, 누적된 실적을 연단위로 환산 후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누적액으로, 해당 실적액을 연단위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이 향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연도별로 배분하여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산출
 - 동 특례의 경우 2020년 국내로 복귀한 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연도별 감면 실적은 매년 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되어 나타남

	감면액 발생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2024년 복귀자					

- 향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잠정치율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향후 제작되는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율 적용 여부는 개별 작품별로 국내 제작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며¹⁾, 동 추계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기본공제율만을 적용하여 가정
- 향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받는 업체에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도 고려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행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동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포함된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현재 세액공제 실적이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동 조항은 2024년 이후 출자분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02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에 신고됨에 따라 공제실적 파악이 어려움
-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이 향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의 경우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과세연도 공제액을 추정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후 복귀형태’ 자료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1) 국내 제작비 비율이 80% 이상이며, 4개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2조의10 제4항)

* ① 주요 스태프 인건비의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② 배우 출연료의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③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 이상, ④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3개 이상 보유

3. 상세 추계내역

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8조의3)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국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함

○ 대상자: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국내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²⁾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자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10년* 동안 소득세 50% 세액감면

* 2022년 개정을 통해 감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존 복귀자에게도 적용)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자

□ (감면실적) 동 특례는 2020년 국내복귀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후,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감면실적	신설	0	17	11	15	24	92

주: p는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2) 추계 방법

- (추계방법) 2025년 감면실적(잠정치)을 연단위로 환산 후, 연단위 환산액이 향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세수효과 추정
 - 각 연도별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이를 연단위로 환산

[표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연단위 환산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잠정치)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A)	17	11	15	25	92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2024년 복귀자					
연단위 환산액 (A / 누적연도□□)	17	5.5	5	6.25	18.4

- 2025년 연단위 환산액의 평균(18.4억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

[표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발생

	2027	2028	2029	...	2036	2037
2026년 복귀자	18.4	18.4	18.4	...	18.4	
2027년 복귀자		18.4	18.4		18.4	18.4

(3) 추계결과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8.4억원, 2037년 18.4억원 등 11년간 총 368억원(연평균 3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8조의3)	-18.4	-36.8	-36.8	-36.8	-36.8	-36.8	-36.8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36.8	-36.8	-36.8	-18.4	-368	-33.5	

나. 영상·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6)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해 2017년 도입되었으며,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 2017년 도입 이후 공제대상 확대, 공제율 상승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
 - 현행 기업규모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공제율은 추가공제율 포함 15~30% 수준
 - ※ 공제율(기본+추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

[표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2017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2022년	□ 공제대상에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포함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024년	□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 - 공제율: (기본공제) 중소기업 10 → 15%, 중견기업 7 → 10%, 대기업 3 → 5% (추가공제)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추가공제 10%(중소기업 15%) 적용

□ (감면실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99억원에서 2023년 320억원으로 증가, 2025년 253억원(잠정치)으로 감소함

- 2025년 감면실적은 202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의 효과가 반영되었으나 2024년 25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

[표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실적: 2020~2025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99	170	309	320	258	253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향후 공제액 추정)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잠정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2025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잠정치: 253억원

[표 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

(단위: 억원)

	2027	2028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53	-253

(3) 추계결과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253억원, 2028년 253원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506원(연평균 253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2년 연장 (안 제25조의6)	-253	-253	-506	-253

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8)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되어 시행 중
 - (개정연혁)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8.12.24. 신설된 규정으로 2022.12.3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018.12.24. 신설: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2020.12.29. 일부개정: 2022.12.31.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율 상향(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2022.12.31. 일부개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현행규정)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2) 추계방법

- (감면실적)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감면실적은 130.8억 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22.12.31.까지 복직 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공제

[표 10]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3~2024년

(단위: 억 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	2024	2024
소득세		25.0	8.5	46.8
법인세	중소기업	27.1	12.9	45.0
	중견기업	24.4	0.4	39.0
	소계	51.5	13.3	84.0
합계		76.5	21.8	130.8

자료: 국세통계포털 및 국세청 제출자료

□ (세수효과 추정)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21~'23)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소득세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수가 변동한다고 가정
 - 최근 3년('21~'23)간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률은 △4.7%
 - 고용노동부 자료는 종자사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용 규모 기준과 차이가 상당³⁾하여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지 않음

[표 11]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2019~2023년

(단위: 개, %)

	복귀형태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업체	전체	496,873	516,236	515,710	436,191	463,305
	① 지속 근무	423,897	428,642	410,716	370,243	332,504
	② 단축 근무	14,650	13,408	14,652	19,860	36,006
	①+② 합계	438,547	442,050	425,368	390,103	368,510

전년대비 ①+② 합계 증감률 (0.80) (△3.77) (△8.29) (△5.54)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각 연도

-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개정안에 따른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영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추계

3) 김정우,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식별과 기업규모별 고용현황”, 「KLIPANEL 제24호 (2023-03)」, 한국노동연구원, 2023.10.16.

[표 12] 신고연도 기준 감면실적 추정치: 2027~2028년

(단위: 억 원)

		2027	2028
소득세		40.5	38.6
법인세	중소기업	39.0	37.2
	중견기업	33.8	32.2
합계		113.3	108.0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13.3억 원, 2028년 108.0억 원 2년간 총 221.3억 원(연평균 110.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28년

(단위: 억 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29조의8 제5항)	113.3	108.0	221.3	110.7

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7)

- 현행법 제25조의7은 문화산업전문회사⁴⁾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동 조항은 2023년 말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됨

[표 14]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기한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20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현재 세액공제 실적 이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동 조항은 2024년 이후 출자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024년 귀속 분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에 신고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을 사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2025년 감면실적이 추정곤란으로 제시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문화산업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동시에 해산하며 프로젝트의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